

사단
법인 대한속 기업회

제 1 회 임시총회 회의록

1969. 5. 1

개최장소 신문회관 대강당

회 순

1. 회 계
2. 국 민 의 례
3. 회 장 인 사
4. 내 빈 축 사
5. 성 원 보 고
6. (가칭)사단법인대한속기협회창립총회회의록 통과
7. 회 무 보 고
8. 1968년도 결산승인 및 감사보고
9. 1969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승인
10. 정 과 계 정 (추 인)
11. 임 원 개 선
12. 기 타
13. 개 회

1. 개최 특지일자 1969년 4월 24일
2. 개최일자 1969년 5월 1일
3. 개최장소 신문회관회의실
4. 출석회원수 재적 151인
 출석 107인
5. 사회자 성명 부회장 장 기 태
6. 진행 총무이사 유 지 영
7. 개최선언 (오후 1시 개최)
8. 국민의례
9. 회장인사

이원만 회장의 유고복참으로 장기태 부회장이 이제는 사단법인체인 만큼 전보다 적극적인 회원의 참여로 협회 발전에 기여해달라는 요지의 인사가 있었음.

10. 내빈축사
배영호 국회사무총장을 대이하여 권료섭 국회사무처 의사국장이 축사를 함.
11. 성원보고
유지영 총무이사로 부터 재적회원 151명중 107명 이 출석 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함.
12. (가칭) 사단법인대한속기협회창립총회회의특 통과

유 지 영 총무이사로부터 건차 총회회의록 낭독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사회가 이견 여부를 회원에게 문의한바 건원 이의 없다 하여 통과됨

13. 회무보고

안인영 이사장으로 부터 별지(계 1회임시총회자료참주)와 같이 회무보고를 하다.

14. 1968년도 결산승인 및 감사보고

유 지 영 총무이사로부터 1968년도 결산(별지)을 보고하고 고재흠 감사로 부터 감사보고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 사회가 이의 여부를 회원에게 문의한바 건원 이의없다 하여 통과됨.

15. 1969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승인

유 지 영 총무이사로부터 1969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승인에 있어서는 건차 사단법인창립총회에서 심의확정된것이나가 그대로 통과시켜 달라는 보고가 있었음.

이에 대해서 이동임 회원이 1969년도 세입항의 이월금과 1968년도 결산항의 현금잔고가 맞지 않는데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답변으로서 유 지 영 총무이사가 그것은 감사임자와 회계년도 변경등으로 인한 문제로서 생긴것이니까 감독청에서 허가된 대로 이해해 달라는 요지의 답변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의사진행으로 김백근 회원께서 이 예산안을 회계

년도 변경으로 금년내임에 결산을 해야되니까 그때에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집행부에 상정을 촉구하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자는
동의에 대하여 전원 찬성하여 통과됨.

16. 정 관 개정 (추인)

유지영 총무이사로 부며 건차 사단법인창립총회에서 심의 통과
지켜준 정관을 사단법인의 인가를 받기위해서 문공부준칙에 맞도록
개정한 정관(제 1 회 임시총회자료 참조)를 낭독함.

이에 대하여 사회가 이익어부름전회원에게 질의한바 이의없다 하여
원안대로 통과됨.

17. 임원 개선

사회가 회장, 부회장을 예외한 임원(전이사진)이 사표를 제출하였
으니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좋겠느냐는 처리방안에 대하여

김백곤 회원으로 부터 현이사진은 사단법인인사에 공로가 많고 또
법원에 등기까지 되었으니 사표를 반려하고 전원유임시키자는 의견
이 있었고 김진기 회원으로 부터 안인영 이사장은 신병때문에
도이적으로 더 일을 맡길수 없으니 전원의 사표를 수리하되 이사장
만 개선하고 나머지 이라는 유임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자는 동의를
함. 이에 대하여 사회가 표결에 대한바 이의없다하므로 전원
사표를 수리함.

1. 이사장 선출

사회가 이사장선출방법을 집의한바 항인 하회원으로부터 구두
로권으로 정 원 도 회원을 이사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전회원이 이의없다 하여 사회는 정 원도 회원이 이사장으로 선출된
것을 선포함.

2. 이사, 감사선출

사회가 이사, 감사선출에 대하여 집의한바 양철 재 회원으로 부터
이사, 감사선출은 신임이사장과 회장단이 상의해서 발표하라는 동의에
대하여 전회원 이의없다 하므로 사회는 동의대로 통과된것을 선포
하고 정회를 선포함.

(오후 2 시 20분 회의 중지)

(오후 2 시 30분 계속 개회)

사회로부터 속 개를 선어하고 회장단과 신임이사장이 검입한 명단을
발표하고 이에 대해서 이의유무를 문의한바 다수회원이 이의없다
하므로 만장일치로 선출되었음을 선언함.

새로 선출된 임원을 다음과 같다.

이 사 장	경	원	도
이 사	유	기	영
"	이	용	수
"	건	해	성

이	사	이	강	현
"		한	봉	영
"		김	영	선
"		한	종	영
"		송	박	문
"		한	등	춘
"		양	원	용
"		최	용	식
감	사	김	인	영
"		고	재	흠

18. 기 타 사 항

신임임원의 임기에 대하여 69년말까지라는 김 경 만회원의 주장과 70년말까지라는 김 진 기 회원의 주장이 양립하였으나 다수 회원이 70년말까지가 옳다고 하여 신임임원의 임기는 70년말까지로 결정함. 다음 건 흥 복 회원이 동아일보사 광고란에 관직도 없는 국회속기장의 명칭을 내걸고 개인교수를 한다는 것은 속기인의 양식에 관한 문제인 만큼 앞으로는 이런 불명예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발언이 있었고 또 양철재 회원으로 부러 첫째 속기사의 대우 개선문제로 수당을 좀더 세분

한양대학교수장 김진기

하여 연구수당 기술투입금 개선이 될수 있는 방안을 신임원진에서
연구해 달라는 부탁과

둘째 남상천 씨의 사유비단체에 대해서 우리 협회로서는 말씀
내지 묵살시킬것이나 그냥내버려둘것이나 우리방향으로 끌려오도록
유도할것이나 이 세가지 문제를 신이사진에서 연구해서 대응책을
마련 하도록 강력히 건의하고

셋째 협회가 사단법인으로 된 이상 속기인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정부기관이나 국영기업체에 인사장을 보내달라는 건의가 있었음.

다음. 김영춘 회원으로 부터 속기무로 강습을 어떤 특정법식에서만
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또 회원의 회비가 얼마되지않는데 이런
장소를 빌린것은 너무 과대지출이 아닌가 하는 발언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안인영 이사장이 답변으로서 속기무로 강습은 신청하는 법식
에 한해서 평등하게 하고 있으나 현사건으로보아 학원을 가진 법식
이 없어서 그렇게되었으니 이해해 주기바라고 총회장소는 사단법인체
가 특별위원회를 빌려서 한다고 하는 문제는 여러가지면에서 곤란한
점이 있어서 이 장소를 빌렸다는 해명이 있었음.

또 한봉영 회원으로 부터 안인영이사장과 사단법인설립에 공로가
많은 임원에 대하여 표창을하되 그 인도와 방법은 신임이사회에서 결정
하자는 위임동의에 대해 건원이의가 없어 만장일치로 가결됨.

끝으로 신임 정 원 도 이사장의 취임인사와 안 인 영 전 이사장의 퇴임인사가 있은 다음 기타 사항을 종결함.

19. 개 회

사회가 모든 부의안건이 끝났으므로 회의를 선언함.

(오후 3 시 10분 산회)

- 유 칙 : 1 제 1 회 임시총회자료 원부
2 감사보고서

第1回 臨時總會
會議錄

1969. 5. 1.

(於新聞會館).

社団法人 大韓速記協會

社団法人 大韓速記協會

第1回臨時總會 會議錄

會 順

1. 開 會

2. 國民儀禮

3. 會長人事

4. 來賓祝辭

5. 成員報告

6. (仮稱)社団法人大韓速記協會創立總會會議錄通過

7. 會務報告

8. 1968年度決算承認及監查報告

9. 1969年度事業計劃書及予算案承認

10. 是款改正(追認)

11. 任員改選

12. 其 他

13. 閉 會

1. 用催通知日字 1969年4月24日

2. 用催日字 1969年5月1日

3. 用催場所 新聞會館會議室

4. 出席會員數 在籍 151人

出席 107人

5. 司會者姓名 副會長 張基恭

6. 進行 總務理事 柳智永

7. 用會宣言 (午後1時開會)

柳智永總務理事가 우리 用會宣言을 하였다.

8. 國民儀禮

9. 會長人事

李源万會長이 有故不考으로 張基恭副會長이

이러는 社團法人體也 만큼 前보다 積極的인

會員의 參與로 協會發展에 寄與해 달라는

要旨의 人事가 있었음.

10. 來賓祝辭

裴泳鎬國會事務總長이 代理하여 權孝愛國

會事務處 議事局長이 祝辭를 한

11. 成員報告

柳智永總務理事로 부터 在籍會員 151名中
107名이 出席하여 成員이 되었음을 報告함

12. (假稱) 社團法人 大韓建記協會 創立總會 會議錄 通過

柳智永總務理事로 부터 前次 總會 會議錄
朗讀이 있었고 이에 對해서 司會가 異議가 없음을
會員에게 同議한바 全員 異議 없다 하여
通過됨

13. 會務報告

安仁榮理事長으로 부터 別紙(第1回臨時總會
資料参照)와 같이 會務報告를 하다.

14. 1968年度 決算承認 및 監査報告

柳智永總務理事로 부터 1968年度 決算(別紙)
을 報告하고 高在欽監事로 부터 監査報告가
있었고 이에 對해서 司會가 異議가 없음을
會員에게 同議한바 全員 異議 없다 하여
通過됨

15. 1969年度 事業計劃書 및 預算案承認

(5)

국회사부처

柳智永總務理事로 부터 1969年度事業計劃書 및
予算案承認에 있어서의 前次 社団法人創立總會에
서 審議 確定된 것이니까 그대로 通過시켜 달라는
報告가 있었음.

이에 대해서 李東一會員이 1969年度 截入項의
移越金額과 1968年度 決算項의 現金殘高가 맞지
않는 데 대한 質疑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答弁
으로서 柳智永總務理事가 그것은 監査日후의
會計年度 變更等으로 인한 문제로서 생긴 것이니까
監督部에서許可된 대로 理解해 달라는 要旨의
答弁이 있었음.

이에 대하여 議事進行으로 金百坤會員께서
이 予算案은 會計年度 變更으로 今年末에 決
算을 해야 되니까 그때에는 이런 錯誤가
없도록 執行部에 覺醒을 促求하고 原案대로
承認해 주자는 勸告에 대하여 全員 贊成
하여 通過함.

16. 交款改正(承認)

(5)

국회사(부)지

柳智永總務理事로 부터 前次 社団法人 創立總會에서
審議 通過시겨 준 定款은 社団法人의 認可를 받기
위해서 文芸部 準則에 맞도록 改正한 定款(中回
臨時總會資料參照)를 朗讀함.

이에 대하여 司會가 異議 有否를 全會員에게
詢한바 異議 無다 하여 原案대로 通過 됨.

17. 任員 改選

司會가 會長·副會長을 除外한 任員(全理事陣)이
辭表를 提出하였의 어떻게 處理하는것이
중점의 處理 方案에 대하여

金百坤 會員으로 부터 理事陣은 社団法人 認可
에 功勞가 많고 또 法院에 登記까지 되었의
辭表를 返却하고 全員 留任시키자는 意見이 있었고

金鎮基 會員으로 부터 安仁 榮理事長은 身病
때문에 道義的으로 더 일을 맡길수 없의 全員의
辭表를 處理하되 理事長만 改選하리 나머지
理事는 留任하리 方法으로 處理하리 勸告를 함.

이에 대하여 司會가 表決에 付한바 異議 無다

하므로 全員 辭表를 受理함。

1. 理事長 選出

司會가 理事長 選出 方法을 同議 한바 黃寅河會員
으로 부러 口頭呼^請으로 鄭源道會員을 理事長
으로 選任 하자는 動議에 대하여 全會員이 異議
없다 하여 司會는 鄭源道會員이 理事長으로
選出 된것을 宣布함。

2. 理事·監事 選出

司會가 理事·監事 選出에 대하여 同議 한바
楊澈在會員으로 부러 理事^{選出}之 新任 理事長과
會長團이 相議 訓示 發表 하라는 動議에 대하여
全會員 異議 없다 하므로 司會는 動議대로 通過
된것을 宣布하고 停會를 宣布함

(午後 2時 20分 會議 中止)

(午後 2時 30分 繼續 閉會)

司會로 부러 續用을 宣言하고 會長團과 新任
理事長이 選任한 名單을 發表하고 이에 대해서
異議有無를 同議 한바 多數會員이 異議 없다

하므로 滿場一致로 選出된 것임을 宣言함.

何로 選出된 任員은 다음과 같다.

理事長 鄭 源 道

理事 柳 智 永

“ 李 龍 洙

“ 全 海 成

“ 李 康 賢

“ 韓 奉 永

“ 全 永 善

“ 韓 鍾 烈

“ 朱 博 文

“ 韓 東 春

“ 梁 源 堯

“ 崔 堯 植

監事 全 仁 寧

“ 高 在 欽

18. 其他事項

新任 任員의 任期에 대하여 69年末까지 라는 全

敬方會員의 主張과 70年末까지라는 金鎭基會員의
主張이 兩立하든이나 多數會員이 70年末까지가 最
고 하여 新任任員의 任期는 70年末까지로 決定함.

다음 田光楊會員이 東亞日報 廣告欄에 官職도 沒
國會速記長의 名稱을 내걸고 他人敍授를 한다는 것은
速記人의 良識에 관한 문제인 만큼 앞으로는 이런
주名譽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兪言이 잇따르고.

또 楊澈在會員으로 부터 次제 速記士의 待遇改
善문제로 手次를 좀더 細分하여 研究手次 技術手次等
改善이 필수 잇는 方案을 新任任員陣에서 研究해
달라는 兪言과

둘째 남상원氏의 似而非團體에 대해서 우리 協會
로서는 抹殺 乃至 默殺시킬 것이냐 그냥 내버려 둘 것
이냐 우리 方向으로 引導하도록 誘導할 것이냐 이
세 가지 문제를 新理事陣에서 研究해서 對策을
마련 하도록 강력히 建設하고

셋째 協會가 社團法人으로 된 이상 速記人 全體
의 利益을 위해서 政府機關이나 國營企業에 人事

狀을 보내 알리는 達詔가 있었음.

다음 金永春會員으로 부러 速記會料講習을 서
면 特許法式에서만 하는 방식은 示揚하고 또
會員의 舍費가 얼마 되지 않는데 ^{總會場所를} 이런 場所를
빌린것은 너무 過大支出이 아닌가 하는 聲言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安仁堂理事長이 答弁으로서
速記會料講習은 申請하는 法式에 限해서 平等
하게 하고 있다 爲る 理由로 보아 學院을 가진
法式이 없어서 그렇게 되었다 理解해 주기 바라고
總會場所는 社団法人體가 特別委員會를 빌려서
한다고 하는 문제는 여러가지에서 困難한 것이
있어서 이 場所를 빌렸다는 解明이 있었음.

또 韓奉永會員으로 부러 安仁堂理事長과
社団法人設立에 功勞가 많은 任員에 대하여
表彰을 하되 그 人選과 方法은 新任理事會에서
決定하자고 新任勳員에 대해 會員 異議가
없어 滿場一致로 可決됨.

끝으로 新任 鄭源道理事長의 新任人事과

▲ 安仁堂^會理事長의 退任人事가 以은 다음 其他
事項을 終結함。

19. 閉會

司會가 모든 附設條件이 끝났으므로 閉會를
宣稱함。

(午後 3時 10分 散會)

有添 : 1. 第1回 臨時總會資料 一部

2. 監查報告書.

第一回臨時總會資料

日時：1969. 5. 1. (木) 12:00

場所：新聞會館大講堂

目次

1. 會 順
 2. 會務報告
 3. 決 算 書
 4. 69年度 事業計劃及 豫算書
 5. 社団法人 大韓速記協會 定款
 6. 會 規
-

社団法人 大韓速記協會

第1回臨時總會會順

1. 開 會
2. 國民儀禮
3. 會長人事
4. 來賓祝辭
5. 成員報告
6. (假稱) 社團法人大韓速記協會創立總會會議錄通過
7. 會務報告
8. 1968年度決算承認及監查報告
9. 1969年度事業計劃書及予算案承認
10. 定款改正(追認)
11. 任員改選
12. 其 他
13. 開 會

會務報告

꽃샘바람에도 끈끈히 망을져 피어나는 꽃과 같이
1968年4月27日 第2回定期總會 以後 10次에
亘한 理事會와 數次의 懇談會를 거쳐 間斷없는 試
鍊과 難澁한 諸問題들을 헤쳐나온 지난 一年間의
協會運營概況을 簡略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 會報發刊에 대하여

任員과 會員間의 紐帶를 密接히 하고 協會의
運營實態를 時時 全會員이 周知함으로써 善
은 意見의 提示와 參與意識을 高歎하는 뜻에서
隨時 發行하는 會報制度를 設置하여 3回까지 配
付하였읍니다. 이는 앞으로도 더욱 活用될 것으
로 믿읍니다.

2. 速記技能檢定에 대하여

速記人의 公信力和 資質向上을 위한 速記技能檢

定 実施는 成案은 거의 되었으나 法人設立 認可
後 實施함이 權威와 公信力을 높인다는 見地에서
그 實施를 法人設立 認可後 곧 施行予定으로 保
留해 왔읍니다.

3. 日本國速記界視察報告書發刊에 대하여

去年 國會 速記第1係長이신 金鎮基會員의 日本
速記界視察에서 얻어진 貴重한 資料를 冊子로 엮
어 會員 여러분의 參考에 供하고자 “日本國速記
界視察報告書”를 當協會名義로 發刊 配布하여 드
렸읍니다. 이는 많은 參考가 되었을 것으로 생
각합니다.

4. 速記無料講習에 대하여

速記文化의 宣傳、普及、社會各層의 認識度의 高
揚、速記人口의 增大등을 위한 速記無料講習會는
本協會主催 朝鮮日報社 後援으로 夏季는 1968年
8月2日 ~ 8月20日까지 451名의 受講生을

接受하였고. 冬季에는 1969年 1月 13日 ~ 2月 1日까지 833名の 受講生을 接受하여 各各 20日間の 講義를 通해 새로운 速記의 「이미지」를 扶植하였고 年年 回를 거듭할수록 受講希望者가 激增하고 있음은 學生이나 一般人들의 速記에 대한 認識이 提高되어가는 証左로서 同慶해 말지 않습니다.

5. 速記工技能檢定實施에 대하여

速記界의 唯一한 法人체라고 自處하는 韓國速記教育協會의 無謀한 試圖로서 副策되어 勞動庁에 提出된 全速記人의 速記技能檢定實施를 委囑받고자 한. “速記工技能檢定實施”에 對해서는 卽刻 當協會로서 “速記工”이란 用語 自体부터 不當함과 韓國速記教育協會가 敢히 全速記人의 技能檢定을 하겠다는 것은 言語道斷임과 現速記界의 實情, 當協會의 構成, 性格등을 밝혀 建議文으로 反駁하였.

고 그後 數次에 玆해 當路 實務者들과 面談 이
의 實施를 強力히 阻止하였고 担当局長을 面談,
具體적인 內容을 說明하여 一旦 保留하겠노라는
確約을 얻었습니다.

6. 法人設立認可에 대하여

去年부터 推遲되어온 社團法人 設立認可는 去年
6月4日 假稱 社團法人 大韓速記協會 創立總會以後
곧 書類具備하며 去年 8月21日 文化公報部에 申
請한 後, 定款上的 問題矣(主로 事業目的의 變更·
追加)의 改正을 비롯 10數次에 걸친 書類의 補
完(書類의 追加·訂正) 또한 補完書類의 收集의
遲滯不振, 既設立된(1967年1月30日 社團法人認可)
韓國速記教育協會의 露骨적인 認可妨害(類似團體의
認可不可를 主로 強調) 이에 대한 文公部 當路
者에 대한 理解要求등으로 어려운 고비를 여러차
레 겪었으나 會長님을 비롯하여 張炯淳國會副議長

님, 文公委 任哲淳 專門委員님, 權孝燮 國會議事局長님,
劉龍珪 國會速記課長님 等 當協會를 恒常 이끌어
주시고 밀어주시는 여러 人士의 積極的인 呼應과
激勵, 도움은 勿論 全會員의 숨은 聲援과 任員의
努力으로, 드디어 지난 4月/4日 字 文公部認可
138號로서 法人設立認可를 得하고 이어 4月
15日 法院에 登記手續을 하여 4月18日 登記
番號 1509號로서 登記를 畢하였읍니다.

이에 全會員과 더불어 慶賀해 마지않은 反面 이
제부터는 過去의, 不美로운 情狀을 剝快하여 이
나라 速記界의 眞正한 밝은 燈불이 될 社団法人
大韓速記協會를 이룩하기에 渾身의 情熱을 傾注해
야 할 一大使命感과 矜持를 무겁게 느끼며 無窮
한 發展있기를 빌 따름입니다.

7. 政府補助金 獲得에 대하여

박찬 가슴의 鼓動을 안고 發足한 當協會의 運

營을 좀더 次元이 높은 見地에서 밀고 나가기
 위한 潤滑劑로서, 不得不 自体予算만으로서는 難處
 한 現實에 비추어 政府補助金の 獲得이 切實히
 要請되어 來年度 予算에서의 補助金 獲得을 위해
 文化公報部 實務者와 相議한 結果 이미 來年度
 予算은 一次査定이 끝나서 上向的인 予算의 再
 調整은 不可能하며 長·次官을 통한 下向的인 予
 算의 再調整의 餘地가 남아 있다는 것으로 會長
 님을 尋訪 現況을 說明드리고 積極的인 協助를
 要請드리고 앞으로 繼續 關係要路에 折衝 最大
 限의 補助金獲得을 위해 最善을 다 해야 할 것입
 니다.

8. 名譽會員推戴에 대하여

上述한 바와 같은 巨創한 事業遂行을 陰陽으로
 뒷받침해 주실 人士로 名譽會長에 李孝祥 國會議長
 님, 顧問에 ~~張炳溥 國會議長님, 柳珍山 議員님,~~

稜泳鎬國會事務總長님, 國會文公委 任哲淳專門委員님,
權孝愛國會議事局長님, 劉龍珪國會速記課長님을 推戴
하엿습니다.

이제 앞으로 協會運營에 더욱 밝은 빛이 되어
주실 것을 믿어, 마치 갑니다.

以上으로서 간단히 會務報告를 마치고 끝으로 本
協會의 發展育成을 위해서는 全會員 한사람 한사람
이 速記界의 소공의 役割을 다 해서 하나로 뭉쳐
一系不乱한 隊伍 밑에 如何한 隘路와 障礙라도 서슴
없이 헤쳐나갈 體質의 改善과 協會없이 모든 것이
이룩될 수 없다는 信念과 覺悟로서 먼 훗날을 바
라보며 整然한 발걸음의 鼓動이 메아리 칠때 비로
소 社団法人 大韓速記協會의 眞面目이 燦然히 빛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變함 없는 여러 會員의 私心없는 參與

意識을 불러 일으키어 한말의 거자씨가 되어 주
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의 아낌없는 맏正이 있기를
바랍니다.

1969年 5月 1日

理事長 安 仁 榮

1968年度決算書

(68.4.4 ~ 69.3.31)

收 入			
款	項	金額	備 考
基本收入	入会費	900	
	会 費	95,000	
事業收入	無料講習	190,300	
	賛助金	30,000	
雑收入	決算利子收入	1,509	銀行預入利子
繰越金	前年度繰越金	95,808	
	計	413,517	

支 出			
款	項	金額	備 考
会議費	定期總會費	6,500	
	理事会費	9,120	
辦公費	辦公費	9,780	
	無料講習	97,950	
	印刷費	16,070	
	記念品代	56,700	
予備費	予備費	44,355	活動費 8,725 常費 2,450) 包含
	計	240,475	

現金残高 173,042

1969년도 사업계획서

당협회의 1969년도 사업계획에 있어서는 전년도
의 성과를 저울삼아 실현성이 있고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협회의 발전을
기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여 전년도의 5개(계속)
사업에 새로 속기전시회를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6개사업계획서를 제출함.

1. 법식연구위원회 설치 (계속)
2. 무료공개속기강습회 개최 (계속)
3. 회지발간 (계속)
4. 속기경기대회 (계속)
5. 자격검정시험 (계속)
6. 속기전시회 (신설)

기본계획

1. 법식연구위원회 설치 (계속)

(1) 목 적 : 시대가 변천되고 발전됨에 따라 언
어의 속도가 빨라지므로 속기문자의 개량은

우리 속기계에 주어진 큰 과제이므로 이 업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2) 구 성 : 협회 가입법식중에서 각법식에 1인 이상의 연구위원을 위촉하고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둔다.

(3) 주 관 : 연구위원회

(4) 연구방법 : 이단 구성된 연구회에서 정한다.

2. 무료공개속기강습회 개최 (계속)

(1) 목 적 : 단기간의 무료공개강습을 실시하여 속기학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과 속기의 대중화를 도모하고 속기인구의 증대에 목적을 둔다.

(2) 기간 및 회수

가. 제6회 1969년 7월~8월 사이 (3주간)

나. 제7회 1970년 1월~2월 사이 (3주간)

(3) 주 관 : 협회 선전부

(4) 방 법 : 협회 선전부의 주관으로 모든 경비를 지출하고 강습기간중의 모든 업무는 협회 선전부에서 관장한다.

(5) 강사초빙 : 무료강습에서 채택된 범식에서 초빙한다.

세부안은 선전부에서 별도 작성함.

3. 회지발간 (속기협회 월보) (계속)

(1) 목 적 : 종래의 회지발간방법을 폐지하고 속기계를 월간으로 발간하여 속기계의 동향과 회원들의 실태를 신속히 회원들에게 알리고 국회를 중심으로 의원들과 일반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기사를 실으므로써 (속기를 토대로) 속기에 대한 P.R과 속기의 수요처 개발에 이바지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협회의 기관지가 되게 운영을 하고자 함.

(2) 주 관 : 선전부

(3) 발간새 대한 세부계획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4. 속기경기대회 (계속)

(1) 목 적 : 속기에 대한 일반의 올바른 인식과 속기술의 향상을 목적으로 함.

(2) 방 법 : 개인정기와 단체정기

(3) 개최일시 : 1970년 2월중

(4) 주 관 : 협회 사업부

세부계획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5. 자격검정시험

(1) 목 적 : 협회의 자격심사 및 기능검정규정에 의한 일정한 자격을 부여하는 시험을 실시하여 속기의 사회적 역할을 충분히 시키는데 있다.

(2) 개최일시 : 가. 1969년 9월중

나. 1970년 3월중

(3) 주 관 : 자격심사위원회

세부계획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6. 속기전시회

(1) 목 적 : 속기학술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전시함으로써 속기에 대한 일반의 인식과 자체의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 간 : 1969년 7월중 1주일

(3) 주 관 : 사업부·선전부 세부계획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1969년도 수지예산(안)

수	입	지	출
회 비	120,000	회 의 비	63,200
입 회 비	6,000	경 상 비	36,000
교재대수입	240,000	무료강습비	191,000
광고수입	360,000	발 간 비	440,000
찬 조 비	120,000	속기경기대회비	39,000
검 정 료	56,000	검정시험비	62,000
전시회수입	300,000	속기전시회비	300,000
이 월 금	50,000	관 공 비	36,000
		예 비 비	84,800
계	1,252,000	계	1,252,000

수입지부

관	항	목	수입액	산출근거
기본수입			126,000	원
	월회비		120,000	10,000 원 x 12월 = 120,000
	입회비		6,000	3,000 원 x 20명 = 6,000
사업수입			1,076,000	
	무료강좌 교재대		240,000	원 명 회 300 x 400 x 2 = 240,000
	발간수입		480,000	
	광고수입		360,000	원 30,000 x 12회 = 360,000
	찬조비		120,000	원 10,000 x 12회 = 120,000
	검정수험료		56,000	1급 ~ 3급 300 원 x 60명 x 2회 = 36,000 4급 ~ 5급 200 원 x 50명 x 2회 = 20,000
	전시회수입		300,000	전시회찬조 300,000 원
이월액			50,000	
	전년도이월액		50,000	
합계			1,252,000	

지출지부

관	항	목	금액	산출근거
회의비			63,200	원
	정기총회		20,000	
	이사회		18,000	3,000 원 x 6 회 = 18,000
	연구위원회		25,200	150 원 x 7 인 x 24 회 = 25,200
경상비			36,000	
	물품구입비		24,000	2,000 원 x 12 월 = 24,000
	통신비		12,000	1,000 원 x 12 월 = 12,000
사업비			1,032,000	
	무료강습비		191,000	
		임대료	68,000	1,700 원 x 20 일 x 2 회 = 68,000
		광고료	70,000	35,000 x 2 회 = 70,000
		용지 및 인쇄비	7,000	3,500 원 x 2 회 = 7,000
		교재대	11,000	5,500 원 x 2 회 = 11,000
		강사료	28,000	3,500 원 x 4 인 x 2 회 = 28,000
		잡비	7,000	3,500 원 x 2 회 = 7,000
	발간비		440,000	다브로이드 판 4페이지

관	항	목	금액	산출근거
		인쇄비	220,000	10회 1,000부 22,000원 x 10회 = 220,000
		편집비	220,000	22,000원 x 10회 = 220,000
	속기정기대회		39,000	
		임대료	2,500	2,500원 x 1회 = 2,500
		용지 및 인쇄비	7,000	7,000원 x 1회 = 7,000
		광고비	13,000	13,000원 x 1회 = 13,000
		거기 및 기술비	11,000	11,000원 x 1회 = 11,000
		잡비	5,500	
	자격검정시험		62,000	
		임대료	5,000	2,500원 x 2회 = 5,000
		용지 및 인쇄비	13,000	6,500원 x 2회 = 13,000
		접대비	13,000	6,500원 x 2회 = 13,000
		채점비	5,000	2,500원 x 2회 = 5,000
		광고비	26,000	13,000원 x 2회 = 26,000
	속기전시회		300,000	
		임대료	49,000	7,000원 x 7월 = 49,000

	재 료 및 용 품 비	60,000	원도지, 포스타칼라 합판 외 필요한 것
	인 쇄 비	40,000	초침장 (등사, 외봉 500매) 프로그램 (등사 20페이지 500매)
	사 진 비	21,000	현상료, 확대료
	광 고 료	26,000	13,000원 × 2회 = 26,000
	인 건 비	74,000	미술, 실내장치, 목공인부
	거 접 대 비	20,000	
	잡 비	10,000	
관 공 비		36,000	3,000원 × 12월 = 36,000
예 비 비		84,000	
합 계		1,252,000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 (이하 "본 협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 2 조 (소재지) "본 협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 시에 두고 필요한 곳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지부를 둘수 있다.

제 3 조 (목적) "본 협회"는 속기인의 총집결체로서 속기문화의 연구발전 및 보급과 속기언의 자질향상, 상호협력,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속기문화 연구에 관한 사항
2. 속기문화 보급에 관한 사항
3. 사회 각계의 속기분야에 관한 사항
4. 속기문화의 선전 출판에 관한 사항
5. 속기기능 검정에 관한 사항

6. 외국속기문화와의 교류에 관한 사항
7. 언론 보도분야에 있어서의 속기에 관한 사항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자격) “본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명예회원) “본 협회”의 목적과 사업을 이해하고 물심양면으로 후원하는 인사로 이사회 의 결의로서 명예회원에 추대된 자
2. (정회원) “본 협회”의 회주에 의한 자격심사에 합격된 자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은 회주로서 정한다)
3. (준회원) “본 협회”에 가입된 속기법식을 습득한 자나 습득증에 있는 자중 이사회 의 결의로서 준회원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

제 6 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협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 7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가진다.

1. (명예회원) “본 협회” 운영의 자문에 응

할 수 있다.

2. (정회원)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기타 회원으로서 모든 권리를 평등하게 행사하며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사항 준수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준회원) 총회에서 의사표시만을 할 수 있다.

제 8 조 (회원의 탈퇴) 회원이 "본 협회"에서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한다.

제 9 조 (징계) (1) 회원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사장은 이사회 의 결을 거쳐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1. 제 7 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본 협회"의 사업을 방해할 때
3. "본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때

(2) 전항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제명
2. 전책

3. 자격정지

제 3 장 임 원

제 10 조 “본 협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부 회장 2인
3. 이 사 장 1인
4. 이 사 12인(이내)
5. 감 사 2인

제 11 조 (선출)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전항의 임원은 문화공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제 12 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공히 2년으로 한다.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 13 조 (임원의 직무)

1. (회장)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본 협회”의 업무를 통리한다.
2. (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3. (이사장) 이사장은 이사회를 대표하여 “본

협회"의 사무를 통괄한다.

제 14 조 (직무대행)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이,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무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5 조 (이사) 이사회를 통하여 "본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의하며 총회 또는 회장으로 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제 16 조 (감사)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본 협회"의 재산사항 감사
2. 이사회와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감사.
3. 전 2호의 감사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총 회

제 17 조 (구성) 총회는 "본 협회"의 최고 결의 기관이며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18 조 (소집) 1)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년 1회 12월중에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임시총회는 정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 19 조 (부의사항)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4.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제 20 조 (정족수) (1) 총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 한다.

(2) 전항의 의결권은 총회에 출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임장을 서면으로 작성 회의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1조 (구성) 이사회는 "본회칙"의 집행 기관으로서 총회에서 선출된 이사로 구성한다.

제22조 (소집)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나 재적이사 4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에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총회후 최초의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제23조 (부의사항)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예비 심의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시 작성에 관한 사항
4. 업무 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5. 정관 개정안의 제출에 관한 사항
6. 회원 가입의 결정에 관한 사항
7. 회원 징계에 관한 사항
8. 기타 중요 사항.

제 24 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 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7 장 집행부서

제 25 조 (부서) 이사회에 다음의 부서를 두고 '부' "회" 에 부장 위원장 1 인을 둔다.

1. 총무부
2. 선전부
3. 사업부
4. 연구 위원회
5. 자력 심사 위원회

제 26 조 (각부서의 업무 분담) 각부서의 업무 분담은 회규로서 정한다.

제 27 조 (각부장 및 위원장의 선출 방법) 각부장 및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8장 재 정

제28조 (재정) (1) "본 협회"의 재산은 이를 기
본 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한다.

(2) 기본재산은 년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문화공보부장관에게 보고한다.

(3) 기본재산은 임대 처분 기타 사건을 설정
하거나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문화 공
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 (세입등) "본 협회"는 다음의 세입으로
그 세출에 충당한다.

1. 회비
2. 보조금
3. 관조금
4. 기탁수입

제30조 (회재감사) 감사는 "본 협회"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년 2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제31조 (회계년도) "본 협회"의 회계년도는 정부
의 회계년도에 준한다.

제9장 사무국

제32조 (설치)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 협회"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33조 (직원) 사무국에 국장 1인과 직원 약간인을 둘수 있다.

제34조 (사무국장등) (1) 사무국장은 이사회와 문화 공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2) 사무국장은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 협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3) 사무국 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4) 사무국 직원은 사무국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10장 보 칙

제35조 (해산) "본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 (잔액채산) "본 협회"가 해산할 때에는 그
잔액 채산은 문화공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 또는 "본 협회"와 유사한 법인이나
단체에 기증한다.

제37조 (정관변경) (1) "본 협회"의 정관 개정은
이사회 결의나 정회원 20명 이상의 성명
날인을 얻어 총회에 제출할 수 있다.

(2) 정관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여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38조 (규칙)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
사회의 결의를 거쳐 본 협회의 규칙으로 정
한다.

1. 지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사항

부 칙

(1) "본 협회"는 대한속기협회 해산과 더불어 일체의 그 업무를 인수한다.

(2) (경과조치) (1)이 정관은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사단법인의 허가를 얻으므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2)창립총회에서 보고 접수된 자는 "본 협회"의 최초의 정회원이 된다.

위와 같이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 정관을 작성함.

1969년 월 일

(설립당초의 '본 협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위	임기	성 명	주 소
회 장	2년	이 원 만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 3가 61의 8
부 회 장	"	장 기 태	" 영등포구 방화동 247의 86
"	"	이 동 근	" 서대문구 응암동 402의 48
이 사 장	"	안 인 영	" 영등포구 차리북동 2의 105
이 사	"	유 지 영	" . . . 구로동 516의 4

“	“	이	용	수	“	성북구 돈암동 산 48의 59
“	“	전	해	성	“	영등포구 신도림동 106의 4
“	“	이	강	현	“	동대문구 용두동 65
“	“	한	봉	영	“	성북구 동선동 1가 1의 5
“	“	김	영	선	“	성북구 옥수동 453
“	“	송	박	문	“	영등포구 신길동 147
“	“	한	동	춘	“	서대문구 불광동 280의 454
“	“	양	원	용	“	성북구 삼양동 2동 711
“	“	최	용	석	“	마포구 아현동 459-27
“	“	한	용	석	“	동대문구 전동동 123
감 사	“	김	충	익	“	동대문구 답십리 1동 132
“	“	교	재	흥	“	성북구 쌍문동 315의 29

회 규

제 1 호 사무집행규정

제 1 조 이 회규는 대한 속기협회의 원활한 사무집행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총회에서 결의된 사무집행은 이사회에서 처리되 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 3 조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무집행은 각부장이 처리되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단, 이사장은 결재한 사항을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조 본회의 본부 설치에 관하여는 총회 결의에 의하고 기부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결의로써 집행하되 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 5 조 회원의 자격심사는 따로 자격심사규정에 의한다.

제 6 조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소집권 1월전에 회원 각자에게 다음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 (1) 소집일시
- (2) 소집장소
- (3) 소집목적

제 7 조 예산의 편성은 각부장이 제출하되 사업부장 이 이를 종합하여 이사회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8 조 예산의 집행은 각부장의 신청을 받아 총무부장이 처리하되 이사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제 9 조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본회의 수입금은 각부장이 총무부장에게 남입하고 총무부장은 이사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 10 조 감사는 회장의 명을 받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장의 동의를 얻어 사무감사를 행할 수 있다.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각부는 감사에 응하여야 한다.

제 11 조 사무집행에 있어서 각부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이를 결집하고 다음 소집되는 이사회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2 조 지방회원이 총회출석을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제 1 호 양식의 위임장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3 조 각종 임원의 임기는 선출된 정기총회로부터
시작하여 2년 후의 정기 총회까지로 한다.
단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창립
총회후 다음 정기총회까지를 1년으로 간주한
다.

제 2 호 명예회원에 관한 규정

제 1 조 정관 제 5 조 제 1 항의 명예회원은 다음과
같이 세분 규정한다.

1. 명예회장
2. 고분
3. 지도위원

제 3 호 각부서의 업무분담에 관한 규정

제 1 조 정관 제 26 조의 각부서의 업무분담은 다
음과 같다.

1. 총무부

- (1) 인장, 문서, 집기, 기타 재산 처리에 관한 사항
- (2) 서무, 회계, 연락에 관한 사항
- (3) 조식에 관한 사항
- (4) 타부 위원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항

2. 선전부

- (1) 선전, 출판에 관한 사항
- (2) 속기문과 보급에 관한 사항

3. 사업부

- (1) 회령 취업알선 및 부리증진에 관한 사항
- (2) 본회 발전을 위한 사업의 실행사항

4. 연구위원회

- (1) 속기문화 연구에 관한 사항

5. 자격심사위원회

- (1) 회령징계 및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
- (2) 기능검정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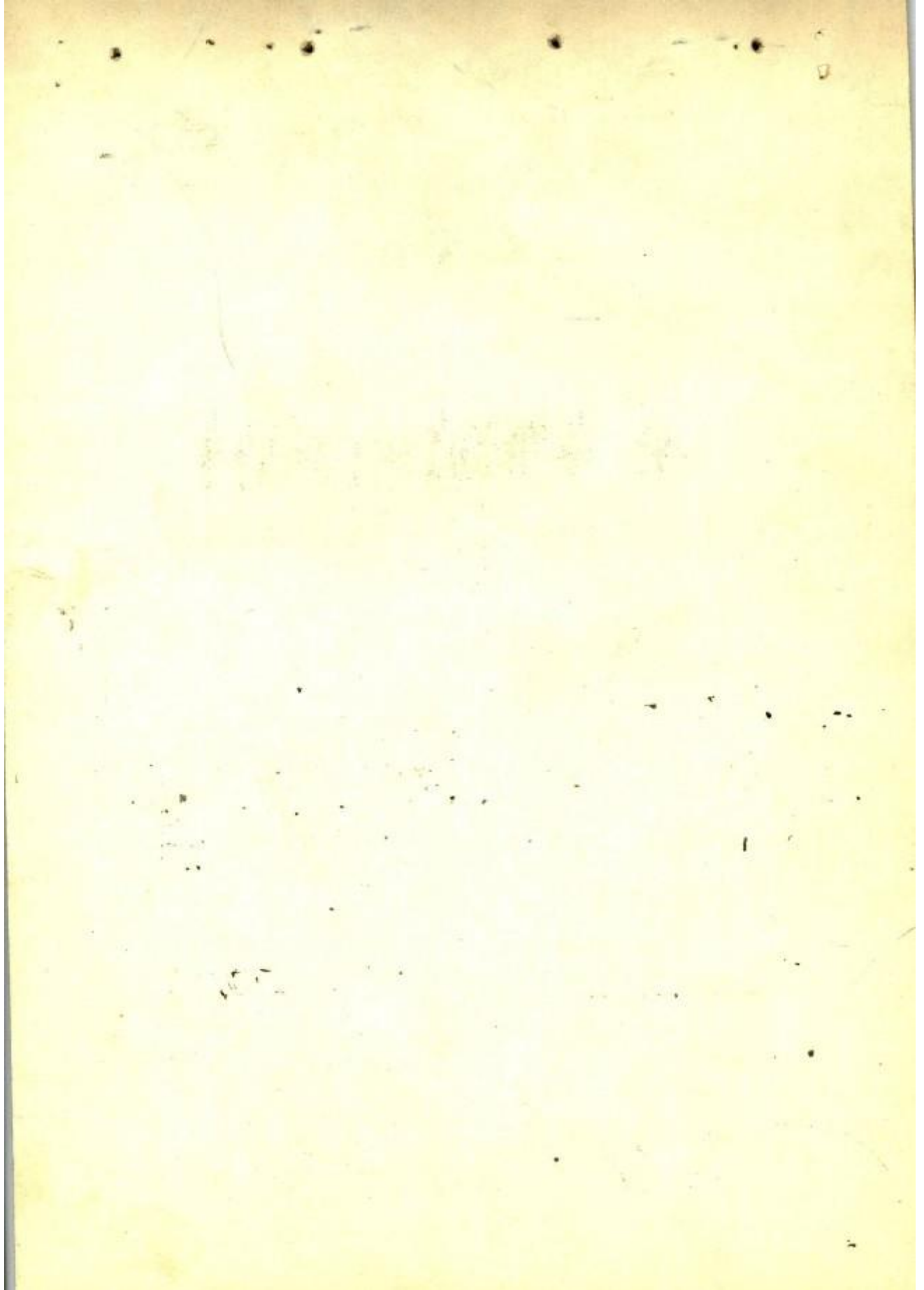
단, 연구위원회와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은
다르다.

제4호 임회금과 회비에 관한 규정

- 제 1 조 이 규정은 정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의 임회금과 회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임회금은 정회원 300 원 이상 준회원
100 원 이상으로 한다.
- 제 3 조 회비는 정회원 월 100 원으로 한다.
- 제 4 조 임회금은 임회와 동시에 납입하고 회비는
매월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제 5 조 회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회원에 대하
여는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정지시킬 수 있다.
- 제 6 조 분회 사업부를 통한 위락숙기에 있어서는
숙기로 전액의 20%를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

- 제 1 조 이 회규는 이사회에서 의결한날로부터 효
력을 갖는다.



1968年度決算에 대한 監査報告書

1968年度 決算에 대한 監査報告書를 드리겠습니다.

收入支出內訳은 방음 말씀 드린바와 같습니다.

收入이 41万3,517원이고 支出總額은 24万475원

으로서 現金殘高가 17万3,042원입니다.

먼저 收入支出內訳을 살펴보면 첫째 收入에 있어서의 当初予算은 81万7,000원이었습니다. 이는 實收入은 41万3,000원으로 約 48%의 低調한 実績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會議체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広告收入으로 予定했던 30만원이全然, 收入되지 않은데 큰 原因이 있습니다.

다음, 支出에 있어서 当初 予算은 81万7,000원입니다. 이는 實際 支出總額은 24만원으로 約 24%의 執行実績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法人課는 認可가 늦어짐에 따라 會料講習以外에는 事業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

이다.

支出函에 있어서 不正해야 되겠다고 생각 되는
것은

첫째 支出科目이 잘못 된 것이 몇번 발견 되었고
또한 決算書에 나와 있는 事業費中 記念品
代 56,700 원은 当初 予算費目에 없는 것이
로 決算費中 總會費나 準備費에서 支出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現在 經常費가 準備費에서 支出 되고
있음이나마는 予算서에 補正을 하나 두는
것이 옳은 것으로 생각 됩니다.

셋째 預金通帳과 支出^紙票과의 差額가 불일
치는 것이 몇번 있습니다. 이것은 昨年에도
指摘 되었는데마는 적은 금액은 支出 할
때 마다 찾는 雜雜함을 덜기 위해서는
一정한 限度 (5,000 원 이하 또는 10,000 원)의
額數를 초과하여 現金을 保有할 수 있는
질을 마련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로써 간단히 일차 보고를 마칠 것입니다.

(을)

국 회 사 무 처